



재형저축 판매 재개가 저축성보험에 미치는 영향

김세중 선임연구원

요약

■ 2013년 3월 6일부터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이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판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재형저축상품은 7년 유지 시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지만 가입조건과 불입한도에 제한이 있으며, 은행권의 경우 현재 예금금리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고 증권업권도 재형펀드 판매를 준비 중임.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장기유지에 대한 부담이 크고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의 혜택이 유사상품에 비해 적어 기대만큼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보험권에서는 기존의 저축성보험 상품이 가입자격과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재형저축과 차별성을 갖고 있어 재형저축상품 출시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재형저축 출시로 인해 저축성보험의 단기적인 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저축성보험이 재형저축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세제 개편이 보험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는 저축성보험의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13년 3월 6일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며, 판매 전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2012년 8월 세법 개정안에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적립식 저축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재형저축이 부활하게 되었고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함.
- 언론에 따르면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권은 상품약관과 금리도 결정되기 전에 예약판매를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판매를 할당하는 등 고객유치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함.
- 과거 재형저축 상품은 1976년 도입 이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10% 이상의 고금리와 아파트 분양 혜택 등이 주어지면서 재산형성용 상품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으나 재형기금 부실화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려워지면서 1995년 폐지됨.

- ■ 재형저축상품은 7년 유지 시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지만 가입조건과 불입한도에 제한이 있으며, 은행권의 경우 현재 예금금리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고 증권업에서도 채권펀드를 중심으로 재형펀드 판매를 준비 중임.
 -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이며, 분기별 300만 원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7년 유지 시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됨.
 - 언론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초 3년간 연 4%대의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연 4% 후반대의 금리와 같은 수준임.
 - 현재 정기적금 및 예금금리는 3.4%~3.6%에 불과한 수준임.
 - 증권업권도 재형펀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 하락 추세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형저축상품의 부활은 저축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11년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2.7%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8년 20%대를 기록하던 가계저축률의 급격한 하락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사회부담금 확대, 저금리 지속 등이 원인으로 꼽힘.
 - 가계저축률 하락세 지속은 경기변동성 확대, 거시경제 안정성 저하, 내수산업 위축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2013년 2월 8일부터 이틀간 세제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을 소개하는 저축 장려캠페인을 벌이는 등 최근 저축률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전개됨.

- ■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장기유지에 대한 부담이 크고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이 과거 재형저축 상품이나 2012년 말 가입이 중지된 장기주택마련상품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지적도 있음.
 -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율 민감도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재형저축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나 유지기간 7년이라는 장기유지의 부담이 있음.

- 금융소비자원은 재형저축 가입 시 최소 7년 이상 한 금융회사만 거래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2012년 말 가입이 중지됨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대안으로 재형저축이 부각될 수 있으나 재형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가입 제한이 있음.
 - 한편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산운용상의 부담으로 은행권이 재형저축상품에 파격적인 금리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보험권에서는 재형저축상품이 기존의 저축성상품과 유사한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형저축상품 출시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저축성보험 상품은 가입자격과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재형저축과 차별성이 있음.
- 재형저축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권도 재형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불입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성보험 상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재형보험 상품을 별도로 출시할 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기존 저축성보험의 경우 재형저축에 비해 비과세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길고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입자격과 가입금액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재형저축과 차별성이 있음.

〈표 1〉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 비교

구분	재형저축	저축성보험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제한 없음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 원으로 연간 1,200만 원	제한 없음
납입기한	7년 의무,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10년 의무
혜택	이자 및 배당 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판매시기	2013년 3월 6일~2015년 12월 31일	-

- 재형저축 출시로 인해 저축성보험의 단기적인 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저축성보험이 재형저축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축성보험의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저축성보험은 은행을 통한 방키슈랑스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재형저축 상품의 판매를 강화할 경우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 간의 대체 관계로 인해, 저축성보험의 단기적인 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재형저축 상품에는 가입자격과 가입금액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고액의 일시납 가입이 많은 저축성 상품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재형저축 상품은 적립식 저축상품인데 반해 저축성보험은 FY2011 기준 일시납보험료 비중이 27.3%에 달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과 장기저축마련저축 폐지 등으로 과세 금융상품에서 비과세 금융 상품으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축성보험 수요 증가도 예상됨.
- 보험회사는 자금이동과 저축성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재형저축 부활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kiri**